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증원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민원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민원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3”을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3”을 “449”로 하고, 전문경력관 “7”을 “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9”를 “78”로 하고, 일반직 계 “79”를 “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을 “7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1. 제1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	---

일반직 계	3
-------	---

4급 또는 5급 이하	3
-------------	---

2. 제1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	---

일반직 계	2
-------	---

5급 이하	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한시정원) (생 략) <u><신 설></u>	제18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 여 제출된 민원 등의 관리 체계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 회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1</u>	-2
•	•	•	
•	•	•	
일반직 계	<u>475</u>	<u>473</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3</u>	<u>449</u>	-4
전문경력관	<u>7</u>	<u>9</u>	+2
•	•	•	
•	•	•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9</u>	<u>78</u>	-1
일반직 계	<u>79</u>	<u>7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6</u>	<u>75</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5